

## 설비건설업 노무관리 상담 사례②

신흥식 / 노무법인 한길 대표 ·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고문 노무사

### 1. 현장 일용근로자가 퇴근후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혼수상태에 있는데 산재가 가능한지 여부

**Q** 현장 일용근로자가 퇴근후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혼수상태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산재가 가능한지 여부

**A**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관련 질환의 경우 업무상 과로와 밀접하게 관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 발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과로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질병은 개인적인 질병 요인(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을 지니고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가능성이 높으나, 법원은 개인적으로 고혈압 등의 질병 유인을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로와 관련한 업무상재해인정 법리와 관련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급격한 놀람, 흥분, 긴장을 유발한 정황이 인정되거나, 평상시보다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거나 장기적으로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해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기간(발생직전, 3일 이내, 1주일 이내, 10일 이내, 2주 이내 등 일정한 기간 단위)의 근로제시간 및 휴무현황, 담

당업무의 내용,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뇌출혈(특히 뇌실질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당해 질병이 기존병인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 기존에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소위 디스크)으로 수술을 받은 직원이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업무수행중 약 1m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기존 교통사고 부위에 퇴행성 병변으로 이환된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Q** 기존에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소위 디스크)으로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바 있는 직원이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업무수행중 약 1m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진찰한 결과 기존 교통사고부위에 추간협착증 등 퇴행성 병변에 이환된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A** 추간관 협착증 등 퇴행성 변병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교통사고부위에 퇴행성질환이므로 기존질환의 악화로 추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당해 사례는 기존질환이 업무수행중 추락사고 후 증세가 발현되었으므로 기존질환이나 퇴행성 변병이 추락사고로 인하여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질환의 의학적 소견 및 치료실태, 추락사고 발생 직전까지의 재발 내지 통증호소사실 유무, 사고발생 전후 정상적인 근로제공 여부, 사고발생 경위 및 태양, 추락사고 충격이 질병부위에 미친 영향, 기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으나 법원 판례의 경향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가급적 기존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목관절에 부상을 당한 일용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향후 산재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상태에서 4년이 경과했는데 산재처리 요구 가능 여부

**Q**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목관절에 부상을 당한 일용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공상처리하고 치료종료 후, 손해배상 합의를 통하여 향후 산재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상태에서 4년이 경과하였는데 현재 산재처리를 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

**A** 산재보상은 특별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나 기타 가해자 내지 이해관계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상처리와 민사합의로 사업주가 자기 부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치료비(산재법상 요양비), 치료기간중의 임금(휴업급여),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장해보상) 및 기타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산재처리에 갈음하였다 할지라도 기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산재보상급여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차액분에 대하여 근로자는 보험급여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급여 청구권 행사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년전 권리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최초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요양한 경우 재요양일로부터 청구권이 인정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보험급여 보상액이 공상처리와 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4. 전문건설업체로서 원청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원청이 부담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인건비(공무원가)에 포함하여 책정하고 일용근로자들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Q** 전문건설업체로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원청이 부담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인건비(공무원가)에 포함하여 책정하고 일용근로자들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청)이 가입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의 경우 1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1개월 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⑤항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공식적으로는 발주자

가 시공사에게,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금액에 노무비에 상응하는 사회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의무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한정됩니다. 즉, 외주공사(위임계약, 용역계약, 도급계약, 시공참여계약 등)를 통하여 공사를 수행케 한 경우로서 직영 근로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가입의무는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 무사 신홍식님은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노사관계학과 경영학석사(노사관계전공)로서 산업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신흥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사무소 예원의 대표를 역임하였고, 대한노무법인 이사를 거쳐 現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등 다수기업과 단체 및 노동조합 자문역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무법인 한길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연락처 : 02)583-7766 / e-mail : hangil7766@korea.com



**토막 상식**

**연상의 여인이 좋아요**

**- 드메 신드롬**

**요**즘은 '연상녀 연하남' 커플이 트렌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근 10년래 결혼한 신혼 부부 중 연상녀 연하남이 10%가 넘는다고 한다. 이런 현상을 '드메 신드롬', 이런 커플을 '드메 커플'이라고 한다.

그런데 '드메'는 어디서 온 말일까.

19세기 초 프랑스 파리에 연상의 여성에게만 사랑을 고백하고 다니는 드메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연하 혹은 동갑인 여성에게서는 그 어떤 매력도 느끼지 못했다.

어느 날 드메는 쇼팽의 연인이자 소설가인 조르주 상드를 찾아가 물었다.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조르주 상드는 별 생각 없이 건성으로 대답했다.

"글쎄, 샘 속이나 있을까……."

하지만 드메는 조르주 상드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샘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후 이 일화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연상의

여인을 사랑하는 현상을 '드메 신드롬'이라 부르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폴레옹 1세와 조세핀이 드메 커플이다. 그리고 쇼팽과 조르주 상드는 6살 차이가 나는 드메 커플이었고, 릴케와 루 샬로메는 14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드메 커플이 많이 늘고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남자는 연하의 여성을, 여자는 연상의 남성을 찾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다. 이것도 하나의 편견이다.

우리나라에도 조혼 문화가 있었고, 전쟁이 있어서 징집이 이뤄지던 때에는 어린 남자와 연상의 여자와의 결혼이 행해지곤 했다.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이 드메 커플이다.

요즘에야 드메 커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아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선이 곱지 않았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 하물며 숫자에 불과한 나이가 무슨 상관이라. 남성들이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물리적인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남성들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여유와 포용력, 너그러운 관용과 따듯한 미소다.

드메 신드롬은 바로 그런 심리의 반영일 것이다.